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8월 13일, 서영교의원 등 13인

나. 회부일자: 2025년 8월 1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4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1.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5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9.) 상정, 축조심사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2.10.)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폐기)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2.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영교의원)

현행법은 기업구조·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 관련 다수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이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중소기업협동조합, 전통시장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등이 2025년 12월 31일에 일몰이 예정되어 있어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등의 활성화를 위해 특례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관련 특례 규정들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간 연장하여 중소기업과 전통시장 등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려는 것임(안 제59조 및 제6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연장)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취득하는 교육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25,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있음.

또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공장용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의 100분의 50, 3년간 재산세

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있음.

개정안은 동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이 실시하는 협동화사업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교육 인프라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연수원을 운영하여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 협동화실천계획을 통해 중소기업의 상호협력과 공동투자를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일몰기한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례의 효과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유사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연장)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해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면서, 전통시장의 상

인 및 슈퍼마켓 또는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의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그 감면율을 100분의 75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역중소기업 지역지원센터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고 있음.

개정안은 동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하려는 것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개별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가 지역 내 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제혜택을 지속적으로 부여하려는 취지로 보임.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동사업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 지역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는 비영리기관으로서 지역 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각종 산업·경영·무역 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익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다만, 일몰기한 연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특례의 효과성,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유사 단체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일반적으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여 지방세 감면을 실시한 뒤 매 3년마다 그 효과 등을 검토

하고 일몰기한 연장여부를 결정해 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개정안의 취지를 위원회 대안에 반영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